



수신 수신자참조

(경유)

제목 **소방기본법 시행령·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·시행 알림**

『소방기본법 시행령·규칙』 일부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·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포·시행일 : 2018.6.27.(관보게재)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(소방기본법 시행령) 소방기본법 개정(2017.12.26.)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정하고, 한국소방안전원에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, 손실보상의 기준 및 지급절차·방법을 정하고,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부과기준을 정함.
- (소방기본법 시행규칙) 소방기본법 개정(2017.12.26.)에 따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정하고,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함.

- 붙임
1. 대통령령제28995(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) 1부.
 2. 행정안전부령제62호(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) 1부.
 3. (참고)소방기본법 시행령·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보고 1부.
 4. (참고)소방기본법 제25조(강제처분 등) 활용 지침 1부.
 5. (참고)강제처분(즉시강제) 등 지침 참고자료 1부.
 6. (참고)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활동 등 관련 판례 및 법리 정리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소1-24(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)

담당자 **김민수** 대응전략팀장 **이창식** 재난대응과장 06/27 **김학준**

협조자

시행 재난대응과-13246 (2018.6.28.) 접수 재난관리과-3870 (2018.6.28.)
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(예장동) / <http://fire.seoul.go.kr/>
전화 02-3706-1413 /전송 02-3706-1419 / minsu36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